

2018 ICAO Legal Seminar in Asia-Pacific Region

2018. 5. 24.

항공보안법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Recent Trends of Legal Cases on the Aviation Security Act

변호사 · 법학박사 권 창 영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I. 서론

1.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한 국민의 관심 증대

2. 항공보안법의 개정 경위

가. 항공기운항안전법(1974. 12. 26. 시행)

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2002. 11. 27. 시행)

다. 항공보안법(2014. 4. 6. 시행)

3. 이 글의 주제

최근 법원에서 선고된 항공보안법에 관한 판결 분석

II. 국가항공보안계획의 합헌 여부

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6헌마780 결정

1. 사실관계

- K는 2016. 7. 31.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대한항공편을 이용하고자 출국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받음.
- 대한항공은 미국 교통안전청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으로부터 K가 추가 보안검색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항공기 탑승 전에 K에 대하여 추가 보안검색을 실시함.
- 추가 보안검색은 보안검색 담당자가, K의 소지품에 대해서는 밖으로 꺼내도록 하여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K의 신체에 대해서는 손으로 더듬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2. K는 국가항공보안계획 8.1.19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3.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선고함

- A. 법률유보의 원칙 : 위 계획은 항공보안법 제10조 제1항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을 두고 마련된 것.
- B. 과잉금지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춘.

III. 항공보안법상 항로의 개념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1. 사실관계

- A. A는 주식회사 대한항공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여객기 객실 서비스 업무 등을 총괄하던 사람임. 2014. 12. 5. 뉴욕 존 에프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KE086편 비행기 일등석에 탑승함.
- B. A는 승무원이 일등석 승객인 자신에게 견과를 대접하는 방식이 자기가 알고 있는 객실서비스 설명서에 규정된 방법과 다르다는 이유로 심하게 화를 냄. 또한 객실서비스 설명서로 객실사무장의 손등을 때리고 승무원에게는 설명서를 세계 던져 가슴에 맞히는 등 폭행하고, 폭언을 함.
- C. 기장은 객실사무장으로부터 기내 전화 연락을 받고 푸시백을 중단하고, 공항 계류장 통제소의 승인을 받아 비행기를 다시 탑승구를 향해 이동시킴.
- D. A는 객실사무장이 잘못했다면서 그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여러 번 소리쳤고, 이에 객실사무장은 업무를 부사무장에게 인계하고 같은 날 01:05경 비행기에서 내림.
- E. 비행기는 같은 날 01:14경 다시 푸시백을 시작하여 이륙하였고, 당초 계획보다 11분 늦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

2. 항공보안법 제42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판단

-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아니함.
- 표준국어대사전은 항로를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정의하고 있음.
- 항공로의 법률적 정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등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에 표시한 공간의 길’로 규정되어 있음(항공안전법 제2조 제13호).
- 입법자도 항로를 공중의 개념을 내포한 단어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항로’를 통상의 의미와 달리 지상에서의 이동 경로까지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입법자료는 찾을 수 없음.

4. 결론

A가 푸시백 중이던 비행기를 탑승구로 돌아오게 한 행위는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IV. 항공기 점거 농성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6고단 6444 판결

1. 사실관계

- B는 2016. 6. 18. 객실승무원이 짐이 많았음에도 탑승권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에 불만을 표시하였음.
- 다른 승객들이 항공기에서 모두 하기(下機)한 후 약 5분간 승무원의 하기 요구가 있었음에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항공기를 점거하고 농성하였음.

2. 판시사항

- B의 행위가 항공보안법 제47조, 제23조 제3항(항공기 점거·농성)에 해당함.
- B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B가 재판이 진행과정에서 상당한 반성의 빛을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B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V. 항공기내 폭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고단4558 판결

1. 사실관계

- C는 2017. 7. 12. 제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여 대구국제공항으로 운항 중인 대한항공 KE○○편 좌석 옆 복도에서 여행사를 통해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항공권을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남.
- 사무장이 C에게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C는 오른손을 들어 올려 사무장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함.
- 객실승무원이 C를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C는 승무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함.

2. 판시사항

-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 벌금형 2회 및 집행유예 1회의 처벌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 참작.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함.

VI. 공항보안검색요원 폭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6. 4. 11. 선고 2016고단1027 판결

1. 사실관계

- D는 2016. 2. 29. 김해국제공항 2층 출국장 입구 보안검색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하여 그곳을 통과하려던 중, 위 보안검색대 항공보안검색 요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정밀 보안검색을 요구받음.
- 이에 D는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항공보안검색요원 5명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움.

2. 판시사항

- D가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D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VII. 항공기 폭파 위협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5고단5234 판결

1. 사실관계

- ▶ E는 2015. 8. 4. 카페에서, 구글에 가입하여 이메일을 개설한 후, 같은 날 13:14경 CBS 노컷 뉴스의 기사 제보란에 “이희호를 태울 항공편을 폭파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라는 내용을 게시함.
- ▶ 그 후 IP 우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KBS 기자의 이메일 등 19개의 각 언론사 및 기자의 이메일로 발송함.
- ▶ 경찰관 등 100여명은 이희호 여사가 탑승할 이스타 항공 비행기와 운송될 구호물품에 대한 정밀검색, 검문소 및 국제선청사 등에 대한 보안검색 및 순찰, 항공기 야간 경비, 시설물 전체 안전검측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실시함.

2. 판시사항

- ▶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의 정상적인 공항운영 및 김포공항경찰대의 정상적인 보안업무 등을 방해한 행위는, 테러 방지를 위해 수많은 인력이 동원됨에 따라 이들의 일반적 업무 처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폭발물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는 경우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일반 시민들도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므로, 죄질이 극히 나쁨.
- ▶ 항공기를 폭파시키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실제로 E가 항공기 폭파를 실행에 옮기려 했던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E는 앞으로 범질서를 잘 지킬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이유로, E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VIII. 판례에 대한 평가와 과제

1. 평가

국가항공보안계획의 합헌성을 긍정적인 결정, 항로의 개념을 정의한 판결은 항공보안법 분야에서 최초로 나온 것임.

2. 형량 분석

- ▶ 법원은 항공보안법위반행위의 위법성을 일반 형사상 폭행·협박 행위의 위법성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그 결과 항공보안법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 한국 국적기에 탑승한 승객이 기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만약 외국의 공항에 도착하여 당국에게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는 반면, 국내 공항에 도착하여 한국 당국에 인도된 경우에는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벌을 받게 됨.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승객들은 국내 공항으로 귀향하는 여정에서 더욱 심한 난동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짐.

3. 과제

- ▶ 국민과 법원이 항공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공운송의 특성과 항공보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외국의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항공보안법에 관한 실무계, 학계, 법조계의 관심이 증대되기를 희망함.

JIPYONG

감사합니다

서울 | 순천 | 부산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자카르타 | 양곤 | 모스크바 | 테헤란